

1. 개정이유

지역 국제회의 산업 거점 육성을 위하여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「국제회의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」(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2-46호, 2022. 9. 20. 시행)가 개정됨에 따라,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별지 서식에 반영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대상 추가(안 별지 제2호 서식)

「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제4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(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 제2조에 따른 ‘박물관 및 미술관’,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‘전문체육시설’)의 종류와 규모 서식 추가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생략

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

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국제회의집적시설 지정신청서

• 어두운 난()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일자	처리기간	일
신청인	기관 명칭	사업자등록번호		
	주소	전화번호		
	대표자 성명	생년월일		
① 집적시설 위치	주소			
② 집적시설 종류	[] 숙박시설 [] 판매시설 [] 공연장 [] 「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제4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(시설 종류:)			
③ 집적시설 규모	숙박시설			
	판매시설			
	공 연 장			
	기 타			
④ 전문회의시설 과의 관계 및 편의시설 등				

「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(뒤쪽)

신청안내		
첨부서류	1. 국제회의집적시설 지정 신청 당시 설치가 완료된 시설인 경우: 「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함)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해당하고 영 제13조의4제1항 각 호의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. 국제회의집적시설 지정 신청 당시 설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시설의 경우: 설치가 완료되는 시점에는 영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해당하고 영 제13조의4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	수수료 없음

근거법규	
「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의3 제2항	「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의3에 따른 국제회의집적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(지방자치 단체를 포함한다)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작성방법

- ① “집적시설 위치”는 「도로명주소법」에 따른 국제회의집적시설 주소, 해당 국제회의복합지구의 명칭 및 위치, 인근 전문회의 시설의 명칭 및 해당 시설로부터의 거리(단위: km)를 적습니다.
- ② “집적시설 종류”는 「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함)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적으며, 이 중 “영 제4조제4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”이란 「국제회의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」 제2조제3항에 따른 영 제13조의4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며 국제회의 개최 및 연계가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합니다.
 1.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 제2조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
 2.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
- ③ “집적시설 규모”는 영 제4조 다음 각 호의 시설 규모를 말합니다.
 1. 숙박시설: 「관광진흥법」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시설로서 100실(「관광진흥법」 제19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의 4성급 또는 5성급으로 등급결정을 받은 호텔업의 경우에는 30실) 이상의 객실을 보유한 시설
 2. 판매시설: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
 3. 공연장: 「공연법」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300석 이상의 객석을 보유한 공연장
 4. 기타: 「국제회의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」 제2조제3항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, 전문체육시설로 다음 사항을 적습니다.
 - 1)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」 [별표 2]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요건에 따라 박물관 또는 미술관 시설명(제1종 또는 제2종 표기), 박물관 또는 미술관 자료 수, 박물관 또는 미술관 시설 면적 표기
 - 2)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[별표 1]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종류, 해당 시설 설치기준 표기
- ④ “전문회의시설과의 관계 및 편의시설 등”은 복합지구 내 전문회의시설과의 업무 제휴 협약 내용, 외국인 이용자를 위한 안내체계 및 편의시설 현황을 적습니다.